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193

발의연월일: 2022. 9. 2.

발 의 자:이태규·조경태·정경희

서병수・金炳旭・성일종

권성동 · 하영제 · 조해진

송석준 · 김승수 · 송언석

노용호 • 류성걸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고등・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에서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・평생교 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이 운용·관리하도록 하 고 있음.

그런데 「국가재정법」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국민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·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「국가재정법」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(안 별표 1 제23호 신설).

### 참고사항

가.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 회계법안」(의안번호 제1719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나. 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 법률 제 호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23. 「고등・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